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」를 제정하고,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는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제7조)

-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교부금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문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」로 이관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」를 제정하고,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과 상위법 근거조항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